

고려인 국적회복의 당위성과  
재외동포법 적용

강혜정, 성수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부산외국어대학교 다문화연구소  
다문화사회와 교육연구학회

[www.kci.go.kr](http://www.kci.go.kr)

# 고려인 국적회복의 당위성과 재외동포법 적용

강혜정, 성수나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 《목 차》

1. 서론
2. 이론적 배경
3. 고려인 국적회복의 당위성
  - 3.1 재외동포의 발생 배경과 차이점(재일한국인(자이니치), 조선족, 고려인)
  - 3.2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 3.3 외국의 귀환정책 사례
4. 재외동포법의 적용 문제
5. 결론

<Abstract>

**Kang Hye Jung, Sung Soo Na.** 2019. 07. 05. **The Validity of Reinstatement of citizenship of Koryuin and The Application of the Overseas Koreans law**, Multicultural Society and Education Studies 4, 1-36. This study aims to argue the validity of Reinstatement of citizenship of Koryuin. The Korean government did not do this, even though it should have been a matter of national necessity for the return of Koreans forcibly drafted by Japan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In particular, the Goryeo people who were relocated or forced into Russian territory wer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return, and

www.kci.go.kr

had to suffer the double pain of forced migration and oppression by Stalin's persecution and oppressio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former Soviet Union due to instability in their status, the forcibly displaced Koreans suffered discrimination and oppression as a stateless or another stranger in each independent state. Despite being victims of history, the opportunity to return to Korea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ese colonial rule was blocked and the opportunity to choose nationality was deprived. Therefore, it is reasonable that life as a stranger was compulsory at a national level, not at their choice, and that the opportunity to restore their nationality should be given.(Dong-A University)

[Key words] Overseas Koreans, Koryuin, Forced labor, Reinstatement of citizenship, the Overseas Koreans law

## 1. 서론

2019년 1월 그동안 재외동포 3세대까지만 적용되었던 동포의 자격을 4세대까지 확대하기 위해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의 입법이 예고되었으나 무산되었다. 이에 재외동포 4세의 체류보장을 위해 2017년 9월부터 시행되었던 한시적 구제방안 기한이 2019년 6월30 만료됨에 따라 국내거주 4~5세가 포함된 동포들이 다시 가족해체의 위험에 처해졌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한시적 구제방안의 기한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시행한다고 밝혔지만, 법의 개정이 없는 한시적 조치로는 임시방편일 뿐 동포들이 겪어야 하는 가족해체의 위험은 해결되지 않는다.

한시적 구제방안은 2017년 한 고려인 어머니가 고려인 4세인 자신의 딸이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을 해결해

www.kci.go.kr

달라는 편지를 대통령에게 보냄으로써 대통령령으로써 시행되었다. 사실상 고려인 4세들을 배려하기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동안 재외동포 3세까지만 법적으로 동포로 인정되어왔기 때문에 재외동포 4세부터는 한국 체류를 위해 미성년자는 가족과의 동반비자로 체류해야 했으며, 성인이 된 후에는 외국인 자격으로 체류하거나 혼자 자신의 국적인 국가로 돌아가야 했기에 가족들과 생이별을 해야 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서는 한시적 구제방안 시행과 함께 재외동포들을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재외동포의 체류에 관한 문제는 4세 이상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다. 재외동포로 인정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경제적인 문제로 한국에서 재외동포의 자격으로 체류가 어렵거나 불법취업으로 체류자격에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특히 고려인들은 경제적 문제로 한국으로 귀환하였거나, 언어로 인해 전문직 취업이 어렵기 때문에 단순노무직에 종사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현재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비자(F4)로는 단순 노무직에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 많은 고려인들이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하고 있어 체류상황이 불안할 수밖에 없다. 방문취업비자(H2)는 체류기간이 한정되어 있고 연장을 위해서는 언어 등 여러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 이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려인들에게는 장기체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문제는 재외동포법의 제정 배경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재외동포법은 재외동포들의 재산권 행사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며 특히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 거주하는 동포들을 대상으로 제정되었기 때문에 중국을 비롯한 동남아거주 동포들과 구소련국가거주 동포인 고려인들에게는 그 자격의 부여에 제한을 두었다. 특히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단순노무직에는 종사할 수 없도록 규정함으로써 재외동포들을 거주 국가와 경제상황에 따라 차별하는 법안을 제정하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고려인들은 일제강점기를 겪어야 했던 한국 역사의 희생자들임에도 불구하고 거주국과 경제적인 이유로 귀환 및 체류에 차별을 받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일제강점기로 인해 희생되었던 동포들이 고려인들만은 아니다. 조선인들은 식민지하에서 살아남기 위해 세계 여러나라로 떠나야 했으며, 특히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으로 끌려간 동포들은 그 수가 더 많다. 이들은 광복 이후 한반도로 돌아오거나 현지에 남아 중국에서는 대표적인 소수민족인 조선족으로, 일본에서는 자이니치라 불리는 조선인으로 사회적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이들과 다르다. 광복 이후 한반도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조선족이나 자이니치들과는 달리 고려인들은 스탈린의 강제이주 및 억류정책 그리고 냉전으로 인해 50년 이상 귀환의 기회를 차단당했다. 광복 이후 비록 남북한의 전쟁으로 한국이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전쟁이 끝난 후 정부는 해외에 억류되어 있는 동포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했음에도 대한민국정부는 이를 외면함으로써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것이다. 이는 국적승계 법령<sup>1)</sup>에 따라

---

1) 최경욱(2014), “중국동포와 한국국적 취득의 문제점”, 일감법학 제 29호, 2014. 최경욱 (2018),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법학, 26(1), 1-33.재인용. 최경욱은 2014년 사할린 징용 피해자 후손, 국적 확인소송에서 조대현 재판관의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국적이 대한민국임을 판결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해석하였다.

1. 남조선과도정부 법률 제11호(국적에 관한 임시조례) 제2조: ‘조선인을 부친으로 하여 출생한 자 등은 조선의 국적을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1948. 7. 17.) 제3조: 대한민국의 국민 되는 요건은 법률로 정한다. 제 100조: 현행 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

2. 일제가 대한제국을 강제병합한 후 칙령 제318호로 대한제국을 조선이라 칭함 - 대만인과 사할린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면서도 조선인에게는 일본 국적법을 적용하지 않았으며, 일제시대 민적법에 따른 민적이나 조선호적령에 따른 조선 호적은 일본의 호적법에 따른 일본호적과 준별 하였으며, 조선호적과 일본 호적과의 교류는 혼인·이혼·입양·인지

고려인은 대한민국 국민이며, 대한민국 헌법 제 2조 2항에 국가가 재외국민을 보호 할 필요가 있음이 명시되어 있음에 근거한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고려인들에게는 귀환 및 국적 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정부의 역할을 망각했던 역사적 과오를 반성하고 되풀이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러한 기회는 재외동포 3세 또는 4세까지라는 한정적인 것이 아닌 국적선택이 가능한 연령의 고려인들에게 모두 주어져야 할 것이다. 이제는 국가에 의해 희생된 고려인들의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주고, 이를 위해 이들에게 한시적으로나마 국적선택의 자율성을 부여함으로써 이방인으로서의 고통을 멈출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논문은 이러한 국적회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그 당위성

---

등 특별한 신분변동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 되었으며, 그 결과 일제시대에는 호적을 기준으로 일본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 조선인으로서의 지위를 가진 사람을 법적으로 구별

3. 일제는 1941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만주 거주 무호적 조선인에 대하여 간단한 절차로 적을 취득하게 하여 재만조선인(在滿朝鮮人)으로 하는 취적사업을 하였으며, 조선호적령은 일제 패망 이후에도 재조선미국 육군 사령부군정청 법령 제21호에 의하여 효력이 지속 되었으며, 임시조례 제5조는 일본호적을 취득한 혈통상 조선인이 일본호적에서 이탈하면 조선 국적을 소급적으로 회복한다는 취지의 규정이 있었으며, 호적의 임시조례에 관한 규정(1948.4.1. 남조선과도정부 법령 제179호)에 의하여 38선 이북에 본적을 두고 38선 이남 에 거주하는 자의 신고를 받아 38선 이북에 거주하는 자에 대하여 서도 가호적이 편제되었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위 임시조례에서 말하는 '조선인'이란 일제시대에 조선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 즉 조선호적에 등재되었거나 등재 될 사람을 의미한다고 본다.

4. 제헌헌법 전문에서,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들 대한민국은 기미 3·1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 세계에 선포한 위대한 독립 정신을 계승하여 이제 민주 독립국가를 재건'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1919년 3·1운동을 계기로 수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헌법인 대한민국임시헌법(1919. 9. 11.) 제1조에는 '대한민국은 대한인민으로 조직함' 이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대한민국 임시헌장(1944. 4. 22.) 제3조에서는, '대한민국의 인민은 원칙상 한국 민족으로 함'

을 논함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첫째, 재외동포발생의 배경과 각국 재외동포들의 국적선택의 기회를 비교한다. 둘째 ‘국적회복’의 전제가 분명 그들이 ‘한국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기 때문에 고려인들의 민족의식 및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다. 셋째 외국의 귀환정책 사례를 통해 시사점을 찾아보며, 마지막으로 재외동포법의 부당함을 분석함으로써 고려인 국적회복의 당위성을 논하고자 한다.

## 2. 이론적 배경

1999년 2월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법이 공포되었다. 재외동포법 제정의 배경에는 90년대 교민정책에 대한 여론의 강한 요구와 국내 경제적 사정으로 재외동포들의 재산권 행사와 출입국 편의 제공<sup>2)</sup> 그리고 공산권 국가와의 교류 가능 등 이었으며, 그 자격은 “한민족 혈통을 가진 자”로 정의하였다.

그러나 재외동포법 적용대상에서 재중동포(이하 조선족)와 CIS(이하 구소련)소속 국가에 거주하는 동포들은 제외되었다. 이는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구소련 국가 정부의 항의 때문으로 외교적 분란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라고 하였으나 이 시기 조선족의 대량 유입으로 국내 노동시장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컸기에 여론을 의식한 결정이기도 하였다. 이로 인해 재외동포법이 동포들을 차별하는 법이라는 비판적 여론이 형성되었고, 이후 재중동포들의 헌법소원심판 청구로 재외동포법의 차별적 내용은 개정되기에 이르렀다.

중국과 구소련국가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일제식민지라는

---

2) 이철우(2002),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법과사회이론학회22권, 22호. 253-278.

비극적인 시대를 겪었으며 국가가 보호하지 못한 국민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물론 광복 이후 조선족과 고려인의 국적선택의 기회에 차이는 있었지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오랜 기간 국가가 외면해 온 희생자였던 것은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이 선진국 거주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귀환권을 제한하고 국내 고용시장의 교란을 야기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한 것이다.

사실 한국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하여 약자인 국민들이 희생되었음에도 이들을 외면하거나 오히려 죄인으로 누명을 씌워 국가가 피해자들에게 2차 가해를 해온 사례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원나라로 끌려갔던 여성들이 돌아오자 환향녀라 부르며 그들을 차별하였고 조선시대에는 청나라에 전쟁포로로 잡혀갔던 여성들이 살아 돌아오자 홍제천<sup>3)</sup>에 몸을 씻으면 죄를 사해준다고 하며 살아 돌아온 여인들을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죄인으로 낙인찍었다. 가깝게는 위안부 할머니들이 살아 돌아왔을 때도 가족과 마을에서는 그녀들에게 책임을 물었고 국가는 오랜 기간 관련 문제해결에 미온적으로 대처하였다. 이러한 역사적 과오는 현재도 되풀이 되어 식민지 시대 희생자들을 경제적인 이유로 동포로 인정하지 않거나 하면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위협하는 부정적 존재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광복 이후 스스로 귀환을 포기한 조선족이나 자이니치와 달리 귀환의 기회가 없었던 고려인은 냉전체제로 인해 국가 간 수교가 맺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50년 가까운 기간 동안 한국과 단절되어 살아야 하였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의 존재를 외면하였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은 한국에서는 잊혀진 존재가 되었고 냉전체제 붕괴로 국가 간의 교류가 시작된 이후에도 한국사회에서 이들의 존재는 낮은 이방인으로 인식되었다.

---

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서대문구, 마포구 일대에 걸쳐 흐르는 지방 2급 하천

다행히 국가 간 수교 이후 고려인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며 2008년에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러시아·중앙아시아 한인의 역사 상, 하』를 편찬함으로써 고려인의 역사와 사회문화적 실태, 그리고 사회 구성인으로서의 지위 및 정체성의 변화까지 전반적인 연구가 정리되었다. 최근에는 고려인들의 정체성 및 사회적 지위에 대한 변화, 한국에서의 고려인의 적응문제 및 지원정책이나 법규와 관련한 연구들도 이루어졌으며 또한 고려인의 체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 구제조치가 시행되면서 이와 관련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이중에서도 고려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들은 고려인들이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출입국 문제와 사회적 차별,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으므로 이러한 차별적 법의 개정을 강조하였다. 최경옥(2017)은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에서 재외동포법으로 인해 차별받는 고려인과 후손들이 겪어야 하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고려인들에게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하였으나 이 또한 혜택의 대상이 아주 한정되어 있으며 일시적인 조치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하기에 법 개정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김나경, 선봉규(2018)는 고려인 자녀들의 법적지위가 외국인 신분이며, 불안정한 체류자격으로 인해 겪어야 하는 적응문제와 생활실태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여 재외동포법의 개정과 귀환동포법의 제정을 주장하였다. 홍인화(2016)는 일본은 전쟁 후 해외에 잔류중인 국민들의 귀국을 지원하였으며, 독일과 이스라엘은 귀환법을 기본법으로 제정하여 귀환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음을 밝히고 시사점을 찾고자 하였다.

그러나 많은 역사적 연구와 법적인 연구에도 고려인들의 한국인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인정해야 하는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하지 않고 있다. 다만 그들이 법으로 인해 차별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적응문제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므로 법을 개정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조선족 동포를 비롯한 재외동포법의 적용에서 제외되는 여러 국가의 동포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이기 때

문에 고려인의 법적지위의 회복을 주장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따라서 고려인들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 3. 고려인 국적회복의 당위성

#### 3.1 재외동포의 발생 배경과 차이점(재일한국인(자이니치), 조선족, 고려인)

한국은 일제식민지라는 비극적인 역사를 가졌으나 광복 이후에는 분단과 전쟁, 그리고 냉전이라는 국제적 관계로 인해 식민지적 상처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했다. 특히 독립운동 및 징용과 같은 이유로 만주와 연해주 및 사할린 등으로 떠나야 했던 동포들은 조국의 광복된 이후에도 귀환하지 못한 채 이방인으로서의 고달픈 삶을 살아야 했으며,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이 고국으로 돌아오도록 조치해야 하는 책임에 소홀하였다. 그나마 중국과 일본으로 떠났던 동포들은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고려인들은 그 기회가 전면적으로 차단되었다. 세 국가의 동포들은 일제강점기 시대에 고국을 떠났던 공통점이 있으나 이후 그들이 겪어야 했던 시대적 현실과 대처방법은 크게 다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구소련국가, 중국, 일본 동포들의 차이점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3.1.1 재일 한국인(자이니치)

현재 일본에는 85만 명이 넘는 재일 한국인이 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sup>4)</sup> 이중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일제강점기까지 일본으로

---

4) 박소연(2017). 재일한국인 여성노인 생애사 연구 - 두 개의 조국을 가진 디아스포라의 삶

건너가 살고 있는 조선인과 그 후손들 그리고 광복이후 제주 4.3사건 발발로 일본으로 밀항했던 재일한국인을 ‘자이니치’라 부르며, 현재 조선적을 가진 조선인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교포들이다. 일제강점기에 이들이 일본으로 건너간 이유는 다양하다. 초기 이주자들은 대부분 유학생들과 소수의 외교관 및 정치적 망명자들이었으나 이후 조선에서의 농민의 몰락<sup>5)</sup>과 일본에서의 노동력부족으로 1945년까지 사백만 명이 넘는 조선인이 일본으로 자발적 이주 또는 밀항하였으며<sup>6)</sup> 태평양전쟁 전에는 강제징용으로 끌려간 조선인이 수백만에 달한다.

이들은 일본에서 외국인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아왔기에 언어와 사고에 있어 일본인과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적이 대한민국 또는 조선이기에 오랫동안 일본 내에서도 이방인으로 차별과 박해를 받으며 살아야 했다. 이에 자신들을 보호하고 차별을 극복하고자 조선인들끼리 집단을 이루어 살기 시작하였으며, 친남한 단체인 재일본 대한민국민단(민단, 民團)과 친북한 단체인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朝總聯)를 설립하여 민간단체로서 일본 내에서 재일교포들의 사회적 지위와 권익을 향상시키고 사회적 기반을 다졌다.<sup>7)</sup>

재일동포들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일본에서 사회적 기반을 다지며 적응했기 때문에 종전 이후 한국으로 돌아올 기회가 있었음에도 전쟁 후의 척박한 한국의 현실과 이미 일본에서 삶의 터전을 잡았다는 이유로 귀환하지 않았다. 다만 자신들의 정체성을 잊지

---

5) 일제시대 토지수탈로 농촌이 해체되고 농민이 몰락하였으며 경제적 궁핍에 직면하게 된 농민들은 일본뿐만 아니라 동북아 지역으로 이주하게 되었다.

6)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재외 한인의 역사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underJapaneseimperialism.do>

7) 지충남(2008). 재일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 연구: 민단, 조총련, 재일한인회를 중심으로

않고자 사회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일본으로 귀화하지 않았으며 한국의 여행 비자를 재신청할 경우 한국인으로 국적회복을 권유받기도 하였으나 분단된 조국 어느 쪽도 선택하기 어려워 이방인으로서의 삶을 선택한 경우도 많았다.<sup>8)</sup>

그러나 이들은 여전히 대한민국 국적회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법이 적용되어 한국과 일본의 왕래 또한 자유로우므로 한국에서 체류 문제로 인해 겪어야 하는 어려움은 없다고 볼 수 있다. 재일동포들은 자신의 의지에 의해 국적을 선택하였으며 여전히 선택의 자유가 있다. 그리고 어느 쪽의 국적을 선택하더라도 그들이 한국의 동포임은 변함이 없다.

### 3.1.2 재중동포(조선족)

중국의 한인동포들의 명칭은 조선족이며 2000년대 초 기준 중국 거주 조선족은 약 200만 명, 한국거주 조선족은 약 60만 명이다.<sup>9)</sup> 조선족의 역사는 19세기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 지리적으로 국경이 접해있어 일찍부터 조선의 농민들이 비옥한 농토를 찾아 중국영토에 정착하였다. 이후 일본식민통치가 시작되자 인구의 이동은 더 늘어났으며, 만주사변 이후 일본에 의해 만주로 농민의 집단이주가 실시되어 1940년에 중국체류 조선족은 150만 명에 달했다. 중국의 조선족 중에는 집단이주와 일본에 의한 강제이주 및 강제징용뿐만 아니라 농민에 비해 그 수가 적지만 독립운동을 위해 이주한 사람들도 많았다. 그렇기에 상해에 임시정부가 들어서고 독립운동의 근거지가 되었던 것이다.<sup>10)</sup>

---

8) 박소연(2017). 재일한국인 여성노인 생애사 연구 - 두 개의 조국을 가진 디아스포라의 삶

9) 네이버 지식백과, 조선족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2324288&cid=62055&categoryId=62055>

1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중국의 조선족, 구한말~연변자치족건설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momentoftruth.do>

광복 이후 많은 조선족이 한국으로 귀환하였으나 일부는 중국에 잔류하였다. 이후 조선족은 중국내에서 항일전쟁과 해방전쟁에 적극 참여하여 그 공로로 중국의 공산당은 일찍부터 조선족을 중국의 소수민족으로 인정하고 중국공민 자격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국민당은 조선족을 차별하였고 중국공산당에 협조한다는 이유로 추방을 단행하는 등 조선족을 박해하였다. 그럼에도 이들은 한반도로 귀환하지 않았으며 중국의 내전이 끝난 후에는 중국내 가장 규모가 큰 소수민족으로 민족공동체가 발달하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해졌다.<sup>11)</sup>

대한민국은 전쟁과 냉전으로 오랜 기간 중국과는 국교가 단절되었으나 1988년 서울올림픽을 계기로 한국의 친척들이 조선족을 초청함으로써 이들의 한국방문이 시작되었고, 이후 경제적인 이유로 한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가 늘면서 한국 내 조선족의 인구수는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8년 재외동포법 제정 시 조선족과 구소련 출신의 고려인을 비롯한 몇몇 국가는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는 재외동포법이 재미교포들의 재산권행사를 위한 주된 목적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며<sup>12)</sup>, 국내의 취업시장 질서유지와 노동자 보호를 위함이었다. 특히 중국정부가 소수민족 안정화를 위해 이중국적을 허용하는 것에 반대할 것이 우려되었으며 공개적으로 조선족을 제외할 것을 요구하였기에 외교관계상 이들을 제외할 수밖에 없었다.<sup>13)</sup> 그러나 본규정은 2004년 조선족이 제소한 헌법소원에서 위헌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방문취업비자(H-2)의 발급이 허용되어 한국 내에서 취업여부와 관계없이 허가된 기간 동안 체류가 가능해 졌다.

조선족은 중국내에서 소수민족으로서 사회적 지위를 다졌기에 차별과 억압과 같은 이방인으로서의 고통은 덜 했으리라는 것을 짐

- 
- 11)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중국의 조선족, 조선족의 시련기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momentoftruth.do>  
12) 최경욱(2017),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13) 이진영(2002),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작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조선족 또한 광복 이후 한반도로 귀환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다는 것이며,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중국에 머물렀기에 그들에게 국적선택의 자율성은 충분히 주어졌다는 것이다.

### 3.1.3 고려인

고려인은 독립국가연합(CIS: Commonwealth of Independent States)<sup>14)</sup> 즉 러시아를 비롯한 구소련지역 전체에 거주하는 한인동포들을 뜻하는 말로써 전 세계에 약50만 명이 분포하며<sup>15)</sup> 현재 국내에 약 9만 명 정도가 체류하고 있다.<sup>16)</sup> 국내거주 고려인들의 국적을 살펴보면 2019년 3월 기준 우즈베키스탄 34,937명, 러시아 26,046명, 카자흐스탄 13,121명, 키르기즈 2,790명, 우크라이나 2,534명 외 기타 순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이들의 자녀들까지 포함하여 약 9만 명으로 추정된다.

전쟁과 냉전으로 오랫동안 한국인들에게서 잊혀졌던 고려인은 1991년 냉전체제가 끝나고 한국과 소련이 교류를 시작하면서 한국에 알려지게 되었다. 비록 오랜 단절과 세대교체로 고려인들은 러시아인으로 적응하며 살아왔으나 자신들이 한민족의 자손임을 자각하고 있다.

고려인이 처음 러시아로 이주하게 된 배경 또한 조선족이나 자

---

14) CIS는 구소련의 해체 이후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몰도바, 투르크메니스탄, 타지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 총 11개의 독립국가가 결성한 독립국가연합이다.

15) 오정은 외(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현황조사II, 재외동포재단, 고려인의 분포현황은 우즈베키스탄에 186,186명, 러시아 166,956명, 카자흐스탄 107,613명, 키르기스스탄 18,709명, 우크라이나 13,103명, 벨라루스 1,395명, 투르크메니스탄 1,425명 등 기타지역까지 포함하여 469,959명으로 집계되었다

16)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9년 3월호

이니치와 비슷하다. 첫 이주는 1860년대 생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농업이민으로 시작되었으며, 일제강점기에는 연해주를 차지한 일본에 의해 강제징용 되어 이주하거나, 독립운동을 위해 이주하기도 하였는데 이로 인해 연해주 고려인 중 독립운동가의 후손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시기 연해주 일대는 중국과 러시아의 행정구역 정책이 명확하지 않은 시기였으며 제국주의 일본이 차지하고 있었다. 또한 사할린은 일본영토에 속했기에 연해주와 사할린으로 징용되었던 조선인들은 러시아가 아닌 일본영토에 징용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태평양전쟁의 결과로 사할린은 러시아로 편입되었으며 아편전쟁의 결과로 연해주 또한 러시아에 할애되었다. 이후 연해주에 있던 동포들은 중앙아시아로의 강제이주 및 억압정책으로 러시아에 머무를 수밖에 없었다. 일본은 태평양전쟁 패전 후 사할린 거주 조선인들의 일본국적을 박탈하면서 사할린 동포들의 일본으로의 귀국을 금지하였으며, 이후 스탈린의 억류 정책으로 동포들은 사할린에 잔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일본의 패망과 영토의 주권이양은 사할린으로 강제 징용되었던 조선인들이 고국으로 귀환하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연해주에 성공적으로 정착했던 조선인들 또한 농장의 몰수와 일자리 해고 등 박해와 차별을 당하였다. 1937년에는 러시아의 조선인에 대한 박해가 절정에 달하여 스탈린의 정책에 의해 극동지역에 있던 조선인 172,000명이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 되는 사건이 일어났으며 지도층의 처형과 정착지에서의 억류정책에 의해 이동조차 자유롭지 못하였다. 이러한 박해는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할 때까지 계속 되었으며 1955년이 되어서야 추방되었던 민족들에 대한 명예회복이 이루어져 박해가 멈추었으며 거주이전의 자유가 허락되었다.

강제이주 된 정착지에서 터전을 일구고 적응해 살아가던 고려인들은 1991년 소련이 붕괴되자 독립국가에 소수민족을 차별하는 배타적 민족주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면서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생활

터전을 빼앗기게 되었다. 이로 인해 고려인들은 생계수단을 찾기 위해 다시 이주해야 했으며 이 과정에서 일부 국가에 거주하던 고려인들은 국적인증을 하지 못하여 무국적신분으로 전락하기도 하였다. 소련의 붕괴로 1937년의 강제이주 이후 그들의 후손들 또한 이방인이 되어 떠돌아야만 했으며 이 과정에서 한국으로의 귀환도 크게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나 한국으로 귀환도 쉽지 않았다. 재외동포법은 재미교포들의 이익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었기에 중국동포들과 마찬가지로 고려인들도 법적용에서 제외되었다. 이후 법 개정이 이루어지고 헌법소원 등을 통해 법적용에서 제외되었던 국가의 동포들에게도 합법적인 체류자격이 한정적으로 부여되었으며, 2013년 고려인특별법 제정 이후에는 외국국적동포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러나 당시 무국적자들은 동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무국적의 유형은 고국으로 돌아오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조선적을 유지한 경우와 소련붕괴의 과정에서 무국적자로 전락한 경우이다. 특히 조선적을 유지했던 고려인들은 고국으로 돌아갈 의지가 강했다는 점에서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

현재 가장 문제는 고려인 4세 이상의 체류이다. 재외동포법에 의해 재외동포 4세 부터는 동포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성인이 된 재외동포 4세 이상은 가족을 떠나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러한 강제적 가족해체와 그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19년 6월까지 한시적 구제조치를 시행하게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재외동포의 범위를 4세까지 인정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였으나 무산되어 한시적 구제조치의 기한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여 시행 중이다.

이러한 상황이 고려인들에게는 불합리한 이유는 앞서 살펴본 일본과 중국의 재외동포들과는 달리 광복 이후 귀환의 기회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사할린이 러시아로 반환 된 직후 일본본토에서는 일본자국민들을 본토로 데려오기 위해 이송선을 지속해서 보냈으나

고려인들은 이를 지켜보며 오지 않는 귀환선을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결국 배는 오지 않았다. 이러한 증언들은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부가 재외동포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는 분명 국가의 직무유기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피해는 온전히 고려인들이 감당해야 했기에 이에 대한 보상은 주어져야 하며 고려인들에게 국적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 할 수 있다.

### 3.1.4 광복 이후 재외동포의 한국귀환

앞에서 살펴본 국가별 재외동포들의 공통점은 일제식민지 또는 역사의 희생양이라는 것이다. 그들은 자의보다는 타의에 의해, 그리고 시대적 상황으로 어쩔 수 없이, 생명의 위협을 피해 조국을 떠나야 했다. 그럼에도 반세기가 넘는 시간 동안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왔으며 고국으로 귀환하고자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각 국가의 재외동포로서 차이점도 존재한다. 이들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재외동포 귀환 및 국적회복의 기회 비교>

구분	자이니치	조선족	고려인
이주 배경	유학 및 교역, 강제징용, 밀입국(생계 및 생명의 위협, 정치적 망명)	19세기 중후반 경제적 이주(농업이주), 일제시대 강제징용(만주개척운동), 독립운동	강제징용, 밀입국(생계 및 생명의 위협) 일본, 중국의 영토에서 소련의 영토로 바뀜.
국적	조선적(무국적),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	무국적(조선적, 독립국가의 해체), CIS국가 국민
거주국	외국인	중국의 소수민족	외국인, 소수민족

사회적 지위			
귀환 및 국적회복 기회	귀환 및 국적회복의 기회가 있었으며 현재 국적회복 가능	광복 이후 귀환 및 국적회복의 기회가 있었음. 중국 국민당에 의해 강제 송환이 실시 되었으나 귀환 거부	스탈린의 강제이주 및 억류정책, 이후 냉전으로 귀환 및 국적회복의 기회 박탈. 소련붕괴로 인한 2차 피해

출처: 기존연구들을 토대로 연구자 작성

재일교포인 자이니치의 경우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도 귀환 또는 국적회복의 기회가 주어졌으며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어 한국으로의 입국이 자유롭다. 그리고 때로는 귀환 또는 국적회복을 강요받았음에도 거부하였고, 강제징용의 피해요구 과정에서도 국적회복을 포기하는 등 스스로 자이니치로써의 삶을 지속할 것을 선택하였다.

조선족은 광복 이후 대부분 한반도로 귀환하였으나 일부는 중국에 잔류하였고 중국의 소수민족으로써의 삶을 택하였다. 조선족은 중국국민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중국내 가장 큰 소수민족으로 성장하여 경제적으로도 상위권에 속했으나 중국의 문화혁명 이후 귀환의 기회는 사라졌으며 중국내에서의 지위 또한 낮아졌다. 한 중 수교 이후에는 경제적인 이유로 조선족의 한국입국이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재외동포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여 합법적으로 직업을 구하기 어려웠고 이후 법 개정이 되었음에도 동포로서 한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조선족은 자이니치와 마찬가지로 광복 이후 귀환의 기회가 있었으며 중국의 문화혁명 전까지 북한으로의 왕래 또한 자유로웠다. 그들은 한반도와 국경을 마주하여 원한다면 언제든지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며, 중국 국민당 집권 시에는 조선족의 한반도로의 강제귀환이 시도되었지만 중국에 잔류하였다. 그렇게 귀환의 기회는 충분히 주어졌으며 국적선택의 자율성이 주어졌음에도 한반도로 귀환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 그들의 국적은 스스로 선택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고려인들은 광복 이후 귀환의 기회가 없었다. 식민지 시대 일본인으로서 일본영토인 사할린으로 징용되어 갔으나 한순간 러시아 영토가 되었으며, 일본인 지위를 박탈당함으로써 일본으로 돌아가는 송환선을 탈 수 없었다. 연해주의 일본 영토로 끌려간 교포들 또한 한순간 러시아 영토로 바뀌어 귀환의 기회를 잃었을 뿐 아니라 강제이주와 억류정책으로 거주지 이동조차 박탈당했다. 이후 구 소련이 해체되자 또 다시 삶의 터전을 박탈당하거나 추방당했다. 고려인들이 구 소련에서 박해당하고 이방인으로서 차별을 당하는 동안 한반도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는 차단되었고, 대한민국 정부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기에 광복 이후 그들에게 주어졌어야 할 귀환의 기회는 단 한번도 없었던 것이다.

중전 이후 고려인들은 오지 않는 조선의 송환선을 기다리며 일본인들의 귀환을 지켜보아야만 했다. 그리고 타국에서 오랜 세월동안 박해와 차별을 견뎌야 했다. 그럼에도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으며, 고국으로 돌아가기 위해 귀환을 거부하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귀환의 거부로 무국적자가 된 고려인은 재외동포법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법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그들은 국가가 의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희생자가 된 것이다. 그러므로 적어도 한번은 그들에게 귀환의 기회 및 국적회복의 기회를 주어야 할 것이다.

### 3.2 고려인의 민족 정체성

고려인들은 70년 이상 한국과 단절된 상태였으나 구 소련 국가에서 뛰어난 기술과 적응력을 가진 민족으로 살아남았다. 구 소련 국

가에서는 이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철저히 순응하며 적응할 수밖에 없었으며 억류정책으로 외부와의 접촉조차 쉽지 않아 한국어를 쓸 수 있는 기회가 없어 많은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할 줄 모른다. 이로 인해 한국에서 적응과 취업에 한계가 있으며, 소통의 어려움으로 한국에서 조차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뿌리는 한국인이라 말한다. 이러한 그들의 정체성은 다음 인터뷰에 잘 나타나 있다. 또한 고려인들이 한국에서 겪는 어려움과 부당한 점에 대해서도 사실에 근거하여 확인할 수 있다. 본 인터뷰는 고려인들이 한국어가 서툰 관계로 사례1)은 고려인들을 지원하는 단체의 관계자의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어 통역자의 말로써 서술한 것이며, 사례 2),3)은 고려인들의 말을 직접 옮긴 것이다.

**사례1) 황○○(남, 54세), 고려인 3세, 경남 김해시 거주,  
한국 입국 4년 6개월**

“나의 할아버지는 일제시대 연해주로 강제징용 되었다가 스탈린에 의해 강제이주 되었다. 할아버지는 러시아에서 돌아가셨다. 돌아가실 때까지 조선인으로 사셨고 집안에서 쓰는 언어나 문화는 한국거 뭐.. 그런 거였다. 내가 한국으로 온 이유도 그것이다. 나는 러시아에서는 열심히 살았다. 열심히 살긴 했지만 우리의 흔적이 없었다. 그래서 한국으로 왔다. 그런데 한국으로 오니까 여기서 또 외국인이라 한다. 한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에서 불러줘서 왔을 때 ‘이곳이 당신들의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나 자란 곳이다’ 라고 설명해 주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대부분의 고려인들은 언어가 잘 안 돼서 이런 단체의 도움이 없이는 한국에서 살아가기 어렵다. 버스에서 아무 말 않고 가만히 앉아 있으면 우리는 그냥 한국인이다. 그런데 우리는 한국어가 안된다. 한국말을 못하기 때문에 ‘어 외국인인데’ 이른다. 얼마 전 시에서 하는 행사에 고려인들도 초청되었다. 우리의 대표적인 문화를 보여 달라고 했다. 그때 러시아, 우즈벡, 카자흐스탄 뭐... 이런 출신의 고려인들이 다 모여 의논을 했다.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것은 태극기, 한복, 붓글씨, 뭐 아리랑... 뭐 그런 거 얘기했다. 결국 대한민국이었다.” “우리는 그냥 뭐... 한국인이다. 그렇지만 우리를 대하는 한국인들은 우리를 외국인으로 본다. 또

우리의 체류상황도 그렇고 특히 말이 잘 안되기 때문에 외국인 취급을 받는다. 탈북자들은 안 그렇다.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살 수 있고 집 같은... 돈 같은 거 지원도 받는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거 없다. 우리도 한국의 뿌리인데 차별한다. 내가 러시아에 있을 땐 그냥 이방인이었다. 러시아에 그... 백인들 하고 있으면 그것이 어색하지 않았다. 그냥 나도 다르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한국에 오니까 한국에서는 좀... 뭐... 이방인으로써 소외감... 서글픔... 이렇게 있다.”  
 “생활지원까지 안 바란다. 최소한 뭐... 동포로 인정해주고 일할 수 있게 해주고... 왔다 갔다 안할 수 있게... 뭐... 불법체류자가 안되면 좋겠지...”

그의 이야기에서 고려인으로써 대한민국에서 살며 겪는 차별과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소외감으로 인해 받은 심리적 상처를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다. 또한 언어 때문에 한국에서의 생활이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한 차별과 소외감은 러시아에서 받았던 그것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고려인들이 법적으로 동포로 인정받았으며 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한국인들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은 아직 좁혀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이는 언어 소통이 원활하지 않음으로써 더 크게 다가오기도 한다. 그럼에도 자신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며 그들이 대한민국으로 온 이유 중 하나는 자신의 뿌리가 한국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정체성은 결국 한국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인터뷰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이러한 정체성은 가령 한 사람에게 국한된 것이 아닌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가진 것이며, 또한 대부분의 고려인들이 느끼는 감정이다. 이러한 사실은 성동기(2017)의 연구에서도 나타나 있는데 우즈베키스탄에 거주하는 고려인 청년들은 고려인으로써의 민족성이 강하여 현지 언어를 배우는데 미온적이며 폐쇄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고려인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한국으로 왔으며, 구소련 국가에서도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잊지 않고 살아 왔음을 감안해보면, 대한민국 정부는 더 이상 그들을 외국인으로 쳐우할 것이 아닌 국

적선택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그들의 정체성을 확고히 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사례2) 박○○(남, 29세), 고려인 3세, 경남 김해시 거주,  
한국 입국 2년 6개월**

“집에서 한국말 했다. 글자는 여기서 배웠다.” “할아버지가 한국에서 밀양에서 살았다. 밀양... 할아버지 독립운동 했다.” “나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한국에 왔다. 전쟁... 전쟁 싫어서 왔다. 어머니 러시아 살고 있다. 나는 전쟁 싫다. 그래서 한국 왔다. 그냥 왔다.” “할아버지는 독립투사 못 받았다. 할아버지 우크라이나 돌아가셨다.” “아버지는 이십년에 돌아가셨다. 한국에 오고 싶다 했다. 이십년 돌아가셨다.” “그냥 한국에서 돈 벌고... 살고 싶다.”

본 사례는 독립군의 후손으로 우크라이나에서 살다 내전이 일어나자 한국으로 온 고려인 청년의 이야기이다. 그는 독립군의 후손답게 자신은 한국인의 후손이며, 자신의 아버지 또한 한국인임을 확신하였다. 그러나 그는 한국에서 독립군의 후손으로서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심지어 재외동포비자(F4)가 아닌 방문취업비자(H2)로 한국에 머물고 있다. 그가 우크라이나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비자를 취득해야 하지만 갖추어야 할 조건들이 까다로워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토로하였다.

사례2)에서 볼 수 있듯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는 구소련지역에 거주하는 독립군 및 항일 운동가들과 그 후손들의 문제 해결에 소극적으로 대처해 왔으며 최근 이에 대한 재논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는 있으나, 아직 이렇다 할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또한 고려인들과 고려인 독립군 후손들에 대한 지원조치 대부분 지방자치 및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은 안타까운 현실이다.

독립군들은 일제 식민지 시대에서 조국을 지키고자 자신을 희생하였으며, 우리는 그들의 희생으로 경제적 발전을 이룬 대한민국에서 살 수 있게 되었음을 상기해야 한다. 그럼에도 동포들을 거주국으로 차별하는 것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가에 대한 논의는 더 이상

필요치 않을 것이다. 오히려 고려인 독립군과 후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과 우대정책이 지원되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현재 국민들의 건전한 국가정체성 및 역사의식의 확립과 애국심 함양을 위해서라도 조국을 위해 헌신했던 독립군들의 실태 규명과 그 후손들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국가적 차원에서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례3) 장○○(여, 23세), 고려인 4세, 경남 김해시 거주,  
부산 ○○대학교 3학년**

“아버지, 엄마 가족들 다 같이 살고 있다.” “학생이어서 한국에 지금 살 수 있다. 직업 찾아야 한다. 직업 못 찾으면 전부 러시아에 간다.” “혼자 안가고 가족들 같이 간다.” “갔다가 온다. 또 온다.” “방학이어서 알바 찾고 있다. 일해야 된다. 통역하는 거 찾는다.” “억울하다. 졸업하고 일 찾아야 된다. 러시아 갔다가 와. 다 온다. 그래서 졸업 안하면 좋겠다.”

본 사례는 현재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하며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으로 학생비자로 가족들과 한국에 체류 중인 고려인 4세의 경우이다. 사례자의 부모님은 재외동포로 인정받았으나 재외동포로 인정받지 못한 자신 때문에 가족이 모두 다시 러시아로 돌아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다. 한시적 구제조치가 올해 6월로 끝나기 때문에 졸업 후에는 동법의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올해 초 재외동포 4세까지 재외동포로써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된다는 소식에 희망을 가졌으나 개정이 무산되어 좌절이 컸다. 그렇기에 차라리 대학을 졸업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사례자는 이러한 일을 겪는 것을 ‘억울하다’고 표현하였다. 무엇이 억울한가라는 질문에 “모르겠다. 그냥”이라고 대답하였다. 이는 많은 고려인들이 느끼는 감정일 것이다. 자신들은 분명 같은 민족이지만 강제징용, 독립운동 등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

이 타국에서 이방인으로 떠돌아야 했으며, 억압받고 차별받아 왔다. 그러나 적어도 러시아에서는 자신들이 국민으로 인정을 받았을 것을 감안한다면 자신들이 조국이라고 생각했던 한국에서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나야만 하는 상황에서 그들이 느끼는 차별의 정도는 더할 것이다.

앞의 사례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들은 자신이 조선인의 자손이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자신의 정체성은 한국인이라 생각함은 분명하다 할 수 있다. 자신이 한국인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그들은 한결같이 “그렇다” 라고 답하였다. 그러한 확고한 신념은 비록 그들이 한국에서 법적 지위로 인한 부당함과 언어소통의 문제를 겪더라도 자신의 정체성이 한국인이라는 사실을 변화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 3.3 외국의 귀환정책 사례

제1, 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인 독일과 일본은 종전 후 귀환정책을 추진하였다. 일본은 중국, 러시아, 사할린 등에 거주하던 자국민들을 귀국시키는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송환선을 보냈으며, 독일은 전 세계에 흩어졌던 독일인들이 귀환할 수 있도록 법안을 제정하였다. 이와는 다른 경우이지만 유대인들은 전 세계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의 귀환을 위해 국가를 건설하고 귀환법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독일과 이스라엘은 귀환권을 기본법으로 규정한 것에 그 공통점을 찾을 수 있으며, 이는 귀환의 허가가 동포들의 거주국가에 따라 차별적으로 주어지는 대한민국과의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독일이 제1, 2차 세계대전에서 패하자 승전국들은 독일군이 점령하던 지역을 분할 점령하였으며 독일영토의 일부를 자국영토로 편입하였다. 이 과정에서 독일인들은 독일제국의 시민에서 무국적자가 되거나 점령국들의 의해 각각의 점령지역으로의 이주 및 강제 추방을 당하기도 하였다. 이 시기 이주 및 강제 추방된 독일인은

1,800만 명 정도 된다.<sup>17)</sup> 물론 이들의 강제추방은 오히려 독일 국내로 귀환하는 결과를 가져왔으나 강제 이주된 독일인은 무국적자로 전락하였다.

독일은 패전국으로써 영토 확정 과정에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함으로써 자국민들이 무국적자로 전락하자 국민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국민들의 송환을 지원하였으며, 귀환자들에게는 독일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물론 귀환자들은 독일어가 가능해야 시민권을 부여한다는 전제가 있었고 독일 통일 이후에는 이마저도 제한이 있었지만, 자신의 민족정체성이 독일인임을 밝힌 독일인 또는 후손들에게는 귀환권을 부여하고 정착을 지원함으로써 출입국 및 독일 정착에 외국인 보다 유리한 혜택을 부여하였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sup>18)</sup>

이스라엘은 해외에 거주하는 870만 유대인에게 귀환권을 부여하였으며 그 후손과 비유대인 배우자에게까지 범위를 확대<sup>19)</sup>하였다. 이스라엘은 귀환대상을 ‘모든 유대민족’으로 규정하지만 ‘유대교인’이라는 종교적 성격이 우위를 가진다. 따라서 이스라엘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가진 사회가 되었으며, 이러한 다양한 인종과 문화를 받아들임으로써 국가가 건립 된지 오래 되지 않았음에도 현재의 강국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되기도 한다.<sup>20)</sup>

살펴 본 바와 같이 비록 전쟁에서 패하였거나 이천년이 넘는 세

---

17) 독일제국 동부지역에서 강제추방된 독일인은 350만 명으로 소련군 점령지역인 동독 지역으로 200만 명, 영국군 점령지역으로 150만 명이 배정되었다. 체코슬로바키아 거주 독일인 250만 명, 헝가리 50만 명, 오스트리아 15만 명도 소련군 점령지역에 75만 명, 미군 점령지역에 225만 명, 프랑스군 점령지역에 15만 명을 각각 이주시켰다.

18) 홍인화(2016). 이스라엘과 독일의 귀환동포정책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제학 박사학위논문.

19) 법무부(2006). 각국의 국적관계법 (제271 법무자료), 이스라엘 국적법 7~9항.

20) 홍인화(2016). 이스라엘과 독일의 귀환동포정책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국제학 박사학위논문.

일동안 국가 자체가 건립되지 못했던 상황에서도 각 국가는 해외의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송환정책을 실시하였다. 특히 일본은 패전과 원자폭탄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종전이 되자마자 자국민의 송환정책을 실시함으로써 자국민 송환을 실시하지 않았던 대한민국과는 대조적인 양상을 보였다. 이는 국가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있어 법과 규정보다는 인도적인 차원이 우선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또한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우선 의무임을 알 수 있다. 물론 중범국가의 인도적인 면을 논한다는 것이 모순이 있긴 하지만 적어도 국가가 자국민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였다는 점에서는 논할 여지가 없다.

독일 또한 패전의 부담과 이념차이로 인한 국가 분단으로 국가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자국민에 대한 책임감으로 송환정책을 실시하였다. 이는 전쟁과 분단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대한민국과 비슷한 경우지만 자국민의 송환정책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국가재건과 경제발전을 이루어낸 후에도 해외동포들에 대한 귀환권을 차별적이며 한정적으로 부여했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이 크다.

#### 4. 재외동포법의 적용 문제

근본적으로 고려인 3세까지는 국적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할 것이다. 3세까지 국적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현재 4~5세들의 체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 될 수 있다. 물론 현재도 국적회복의 방법이 있으나 그 기회는 소수에게만 해당되며 기준을 맞추기 까다로워 국적회복이 쉽지 않다. 국적회복의 기회가 주어져야 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재외동포법의 적용에 문제가 있어 재외동포로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체류에 있어 불합리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첫째, 재외동포법 제 2조 2항의 재외동포의 정의는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로 되어있다. 앞서서도 설명했듯이 고려인들 중에는

무국적자들이 존재한다. 1세대는 고국으로의 귀환을 우려해 조선적을 유지한 경우이며, 후손들은 구소련의 붕괴과정에서 각 독립국가에서의 신분을 인정되지 않거나 내전 및 각각의 이유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수단을 잃어버린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그들은 고려인이라는 소수민족의 특수성 때문에 차별받고 있는 가운데 무국적으로 인해 취업은 물론 기본적인 복지혜택마저 받지 못해 생계에 위협을 느껴야 했다. 이런 가운데 대한민국의 재외동포법은 그들이 무국적자라는 이유로 법의 적용에서 제외했다.

고려인들이 무국적자가 될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원인은 한국 정부에 있다.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며, 헌법에 근거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하고 지키지 못한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 헌법 제2조 2항에는 재외국민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리고 제 1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재외동포와 재외국민은 다르기에 고려인들이 재외국민이 아니라고 반박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고려인들은 귀환의 기회를 박탈당함으로써 국민으로서의 자격과 권리를 박탈당한 것이며 이로 인해 후손들조차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분명 국가의 책임이다. 이는 올해 대한민국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것과는 무관하지 않다. 그 시기 조선인은 국적승계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었으며, 정부가 재외국민을 보호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는 국가가 헌법 제 2조 2항을 위반함으로써 11조 1항이 자연히 무시되어 버린 것이다. 이러한 차별적 법 정책은 국제적 인권조약에도 위반된다. 세계 인권선언 제 2조<sup>21)</sup>에는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있어서는

---

21) 세계인권선언 제 2조

2.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과 같

안 되며, 특히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됨을 명시하였다.

자의가 아닌 국가적, 사회적 문제로 인한 희생자들에게는 무국적의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 무국적인 자국민에게 국적을 주는 것 또한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의무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외국국적의 취득’은 오히려 최근 고위층 자녀들의 병역기피 수단으로 전락하여 그 폐지의 정당성이 더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재외동포법 제2조 2항과 동법 시행령 3조의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는 삭제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둘째, 재외동포법의 제 2조 2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적용한다.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국민을 대표하는 한사람에 의해 국민으로서의 법적지위를 보장받을 수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 법적지위는 입법기관에서 법이 논의되고 사법기관에서 그 법이 지켜지는 것으로 통제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신분을 지정하는 것을 대통령령에 의하여 정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어서 불합리한 일이다.

재외동포법 제 2조 2항의 시행령에서는 재외동포체류자격 취득 요건 및 활동범위에 관하여 ‘외국인의 체류자격’을 준용하도록 하였다. 이로 인해 출입국 관리법 제 23조 3항은 재외동포들의 취업을 어렵게 만들고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주된 원인이 된다.

제 1항에 따라 재외동포의 취업범위에서 단순노무직은 제외된다. 단순노무가 아닌 경우 작업장에서의 소통은 작업의 효율과 기업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취업에 있어 언어소통은 중요

---

은 어떠한 종류의 차별이 없이, 이 선언에 규정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향유할 자격이 있다. 더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독립국, 신탁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주권에 대한 여타의 제약을 받느냐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에 근거하여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하다. 조선족이 공동체를 이루며 한국어를 사용한 덕분에 한국에서 취업 시 언어로 인한 어려움이 적었던 경우와 달리 강제이주로 인해 집단을 이룰 수 없었던 고려인들은 한국어를 사용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가 서툰 수밖에 없다. 따라서 단순노무를 제외한 기술직 및 서비스직으로의 취업은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단순노무를 금지하는 것은 언어가 서툰 고려인들에게 취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

제 2항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는 1항의 ‘단순노무 행위’를 할 경우 불법취업자 신분이 될 수밖에 없고 불법취업자가 될 경우 불법체류가 되어 버리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한 1항은 3항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불법취업으로 인한 공공이익 및 국내취업 질서에 반하는’ 행위로 간주되어 불법체류의 신분이 된다. 그리고 제 23조의 어느 항이든 제 28조 2항에 의거하여 ‘강제퇴거’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이 법조항은 처음부터 끝까지 동포들을 차별하고 취업을 불가능하게 하는 법률이다.

이에 반해 외국인 노동자들은 재외동포비자(F-4)를 발급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단순노무에 취업을 하기도 한다. 물론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도 단순노무 취업은 금지되어 있으나 재외동포비자를 발급받을 이유가 없으므로 꺼리지 않는 것이다. 그렇기에 재외동포비자를 받아야 하는 우리 동포들에게는 역차별의 결과를 낳는다. 현재 한국은 노동력 부족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이 크게 늘고 있으며, 최저임금의 상승에도 불구하고 한국인보다 노동생산성이 낮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 동 법은 그러한 노동의 기회를 우리 동포에게는 금지시켜 놓은 것이나 다름없다. 재외동포법 제정 당시 조선족과 구소련 출신의 동포 및 몇몇 국가를 제외한 이유가 노동시장의 혼란을 방지한다는 취지가 있었으나 현재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외국인 노동자들을 유입해야 하는 실정에서 여전히 ‘단순노무직종에의 취업을 금지’하는 것은 불합리한 조치이

며, 이제는 법의 개정을 통해 우리의 동포들에게 먼저 취업의 기회가 주어져야 마땅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동 법의 ‘외국인의 체류자격에 준함’ 을 삭제하고, 대통령령이 아닌 입법기관을 통한 동포들의 지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으므로 동포들을 차별하는 법조항을 개정해야 할 것이다.

**<표 2 재외동포 법 제4조 관련 시행령의 적용과 결과>**

법 조항	법조문	법적용의 해석	결과
외국인의 체류자격 (제 12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국인과 동일한 지위	동포로서 차별
제28조 2	외국인의 활동에 관한 즉각적인 중지명령 가능	23조를 위반할 경우 즉각적인 강제퇴거 조치 가능	강제퇴거
제 23조 (외국인의 취업과 체류자격) 제3항	1. 단순노무행위를 하는 경우	언어, 교육, 체류자격 등으로 단순노무 외에는 취업이 어려움.	불법체류
	2. 선량한 풍속이나 그 밖의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단순노무로 인한 불법취업으로 사회질서에 반하게 됨.	불법체류
	3. 그 밖에 공공의 이익이나 국내 취업질서 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불법취업으로 인한 공공이익 및 국내 취업질서 혼란을 가져올 수 있음.	불법체류

출처: 법령을 토대로 저자 작성

## 5. 결론

광복 이후 정부는 일본에 의해 외국으로 강제 징용된 교포들의 고국으로의 귀환조치를 당연히 실시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회피하였다. 특히 러시아 영토로 이주 또는 강제징용 되었던 고려인들은 개인적인 귀환의 기회조차 박탈당하였으며, 스탈린의 박해정책으로 강제이주와 억압이라는 이중의 고통을 겪어야 했다. 이후 구소련이 해체 되자 그들의 후손들 또한 소수민족이라는 이유로 각 독립국가에서 삶의 터전에서 추방되거나 차별적 대우를 받으며 이방인으로써 고통을 겪어야 했다.

고려인들의 이러한 고통의 책임은 강제징용에 대항 할 수 없었던 대한민국의 무력함과 광복 이후 이들에 대한 귀환정책을 실시하지 않은 정부의 무책임에 원인이 있다. 정부의 귀책에도 불구하고 고려인들에게 차별적인 법적용을 함으로써 고국에서 조차 이방인으로 살아가도록 강요한다. 대한민국은 헌법을 바탕으로 세워진 국가이며 현재는 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 이를 준용할 의무를 가진다. 따라서 차별적이며 비인권적인 정책을 멈추고 고려인들에게 빼앗긴 권리를 다시 부여하고 국가의 잘못으로 국적회복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 그리고 이의 타당성을 논의 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고려인들은 구소련 국가로 강제이주 되었다. 이 후 국가가 주권을 회복하였음에도 이들이 귀환하지 못하였던 것은 스탈린의 강제이주 및 억류정책과 냉전체제, 그리고 대한민국 정부의 이들에 대한 외면으로 귀환의 기회가 차단되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국적선택의 자율성을 박탈당하고 구소련 지역에 남을 수밖에 없었다. 대한민국 정부의 외면은 국가가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 것으로 국가적 차원에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사안이며, 이를 위해서는 고려인들에게 국적회복의 기회를 제공함이 마땅하다 사료된다.

일제강점기에 국력의 쇠퇴로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던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주권회복 후 강제 징용된 국민들을 송환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였음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50년 이상 이를 외면하였다. 뿐만아니라 고려인들을 국내 노동시장을 교란할 수 있는 존재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약자인 고려인들에게 돌렸다. 이렇듯 국가적 책임을 국민들에게 떠넘겨 왔던 역사적 과오를 대한민국 역사에서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음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부당한 국가의 부당한 처사를 자각하고 역사적 과오에 대한 반성이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둘째, 고려인들의 민족정체성은 한국인이다. 이들의 민족정체성 확인이 필요한 이유는 국적회복의 기회 제공에 앞서 그들의 민족정체성이 한국인임이 전제 되어야 하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의 국적선택이 자신의 의지가 아닌 강제적인 선택이었음을 뒷받침 하는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고려인들은 이러한 민족정체성으로 인해 구소련 국가에서 이방인으로 살아야 했다. 그러나 자신의 뿌리를 찾고자 돌아온 대한민국에서 조차 이방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현실에서 이들이 이방인으로서 느끼는 외로움과 서글픔은 이국땅에서 보다 더 큰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고려인들이 이국땅에서 받은 차별과 억압에도 오랜 세월동안 자신들의 민족정체성이 한국인임을 잊지 않았음을 감안한다면, 이들에게 국적회복의 기회가 주어짐은 마땅하다고 본다.

셋째,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개방된 노동시장을 교포들에게 우선 개방해야 한다. 현재 노동현장에서는 노동력이 부족하여 한국인보다 생산성이 낮은 외국인노동자들을 고용 할 수밖에 없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언어가 다를 뿐 아니라 문화도 다르기에 노동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 뿐만 아니라 최저임금의 상승으로 노동생산성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내국인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기업의 고충은 커져가고 있다. 그럼에도 재외동포들에게 노동시장을 자유롭게 개방하지 않는 것은 재외동포법이 제정되던 20년 전의 노동시장 조건에서 동포들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지금은 그때와 사정이 달라졌음을 인지해야 한다. 노동시장은 이미 외국인들이 없이 유지되지 못한다. 거기에서 굳이 우리 동포를 제외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우리 동포들의 취업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재외동포법의 법 개정이 이루어 져야 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고려인들에게 국적회복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재외동포 4~5세들의 비자문제 또한 자연스럽게 해결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재외동포 자격(F4)을 얻지 못해 위해 방문취업비자(H2)로 입국한 고려인들이 이로 인해 부당한 처우를 받거나 불법체류 및 재외동포 자격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가 해결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재외동포의 체류자격과 활동범위를 ‘외국인’이 아닌 동포로써 인정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단순노무행위를 금지하는 법안을 삭제함으로써 언어가 원활하지 않은 고려인들이 취업을 하는데 있어 부당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련법안만 개정되더라도 현재 대한민국에 재외동포비자로(F4)로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방문취업비자(H2)로 체류하는 고려인들은 경제적 활동을 기반으로 재외동포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하여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기회를 얻을 수 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일본, 독일, 이스라엘 등 귀환정책을 추진한 국가의 사례를 통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음을 인식하고, 그동안 외면했던 재외동포의 귀환지원과 국적회복의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국가의 존립이유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함이다. 식민지 시대와 전쟁으로 황폐해진 국가를 재건하고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였다 하더라도 이국땅에서 박해받는 국민의 보호를 간과했음을 정당화 할 수는 없다.

정부는 이러한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동포들을 경제적인 지위로 차별하는 정책을 시정하여 동포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국가가 국민을 보호해야 한다는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와 국가의 발전이 균형을 이루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김나경·선봉규(2018). 한국거주 고려인동포 청소년의 생활실태에 관한 탐색적 연구: 광주광역시 고려인마을을 중심으로, <다문화와 디아스포라연구> 13권, 한국다문화·디아스포라학회. 23쪽~43쪽.
- 김성중(2006). 사할린 한인동포 귀환과 정착의 정책과제, <한국동북아논총> 2006권 1호, 한국동북아학회. 195쪽~218쪽.
- 김계르만(2005). 성동기 역, 구소련 붕괴 이후 중앙아시아, 고려인의 사회-경제 그리고 민족문화의 발전과정, <소련 및 CIS의 고려인> 1권 3호, 한인이민 역사. 92쪽~195쪽.
- 남근우(2012). 한민족(韓民族)의 준-종족화(準種族化)와 문화 분절화: 김일성민족, 중국조선족, 자이니치 사회의 비교연구, <영남국제정치학회보> 15권 1호, 영남국제정치학회. 233쪽~255쪽.
- 박소연(2017). 제일한국인 여성노인 생애사 연구-두 개의 조국을 가진 디아스포라의 삶, 2017<생명연구> 43권, 서강대학교 생명문화연구소. 223쪽~265쪽.
- 법무부(2006). 각국의 국적관계법 (제271 법무자료), 이스라엘 국적법 7~9항.
- 성동기(2017).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고려인 고등학생들의 교육실태 분석 및 전망, <재외한인연구> 42권, 재외한인학회. 95쪽~134쪽.
- 선봉규(2017). 다문화가정 자녀의 교육현황 및 과제: 광주광역시

- 거주 고려인 동포 자녀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8권 2호, (사)아시아문화학술원. 803쪽~829쪽.
- 오정은 외(2015). 국내거주 러시아CIS(고려인)현황조사Ⅱ, 재외동포재단.
- 이범준(2015). 일본제국 vs. 자이니치-대결의 역사 1945~2015, 북콤마.
- 이승우(2019). 한국 내 고려인동포의 법적 지위와 개선방안, <재외한인연구> 47권, 재외한인학회. 55쪽~90쪽.
- 이진영(2002). 한국의 재외동포정책: 재외동포법 개정의 쟁점과 대안, <한국과 국제정치(KWP)> 18권 4호,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 이철우(2002). 판례평석 : 재외동포법의 헌법적 평가 :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중심으로, <법과 사회> 22권, 법과사회이론학회. 253쪽~278쪽.
- 임채완·선봉규(2013). 과제민족으로서 중국조선족 민족정체성과 문화변용의 상관성 연구, <세계지역연구논총> 31권 3호, 한국세계지역학회. 141쪽~164쪽.
- 임채완(2017). 한국거주 고려인 동포의 현황과 지원확대방안, 고려인주민의 법적 지위 확보와 지원 확대 방안마련, 제7대 광주광역시 의회 제68차 정책토론회, 광주광역시 의회.
- 재외동포재단(2014). 국내거주 고려인동포 실태조사.
- 지충남(2008). 재일한인 사회단체 네트워크 연구: 민단, 조총련, 재일한인회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26권 1호, 한국세계지역학회. 57쪽~93쪽.
- 출입국 외국인정책본부(2018). 출입국 외국인정책 통계월보, 서울: 법무부.
- 최경옥(2017). 재외동포법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서울법학> 26권 1호,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 1쪽~33쪽.
- 최은봉·공도영(2018) 조선적 자이니치와 한국의 출입국 정책- '주

권 장치' 로서의 분단과 이중적 실행, <일본학보> 114권, 한국일본학회. 253쪽~271쪽.

통계청(2017). 한국표준직업분류, 서울: 통계청.

홍인화(2016). 이스라엘과 독일의 귀환동포정책 비교연구, 전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무국적 사할린 동포의 대한민국 국적 확인 소송 - 판례평석. 서울행정법원 2014. 6. 19. 선고 2012구합 26159 판결.

file:///C:/Users/user/AppData/Local/Microsoft/Windows/INetCache/IE/BS9FFTC7/사할린+무국적+동포의+대한민국+국적+확인+소송+판례평석.pdf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중국의 조선족, 구한말~ 연변자치족건설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momentoftruth.do>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중국의 조선족, 조선족의 시련기 <http://theme.archives.go.kr/next/immigration/momentoftruth.do>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A%B3%A0%EB%A0%A4%EC%9D%B8>

ytn뉴스(2018.12.16.)

[https://www.ytn.co.kr/\\_sp/1210\\_201812162033444336](https://www.ytn.co.kr/_sp/1210_201812162033444336)

프레스리안 신문기사(2019.05.07.) 대통령은 '고려인=독립유공자 후예'라고 했지만...

<http://www.pressian.com/news/article?no=239781>.

한국입법학회(2011). 복수국적자 다수발생 국가 국적법제 연구,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2019.03월호 [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553&call\\_from=rsslink](http://www.korea.kr/archive/expDocView.do?docId=38553&call_from=rsslink)

한국산업인력공단(2013). 불법체류 예방을 위한 귀국지원 사업 개

선방안 연구.

법무부 [www.immigration.go.kr](http://www.immigration.go.kr)

재외동포재단 <http://www.okf.or.kr/>

주한 이스라엘 대사관 <http://embassies.gov.il/seoul>

독일연방 이민난민청 <http://www.bamf.de/>

Kaplan, Yehiel S.(2015). Immigration Policy of Israel: the Unique Perspective of a Jewish State. *Touro Law Review*. 31(4), pp. 1089-1135.

Park, Hyun Ok.(2005). Repetition, Comparability, and Indeterminable Nation: Korean Migrants in the 1920s and 1990s, *Boundary 2: An International Journal of Literature and Culture*. 32(2), pp. 227-251.

Seol, Dong-Hoon and Skrentny, John D.(2005). Ethnic Return Migration and Hi-erarchical Nationhood: Korean-Chinese Foreign Workers in South Korea. *Ethnicities*, 9(2), pp. 147-174.

## 필자소개

성 명 : 강혜정

소 속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전자우편 : epui0228@hanmail.net

성 명 : 성수나

소 속 :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국제학과

전자우편 : sssal118@hanmail.net

투고일: 2019. 7. 5 / 심사일: 2019. 8. 5 / 심사완료일: 2019. 8. 16